

#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- 검토 보고 -

### 제안이유

- 공공시설관리 사업소에 “관광체육시설관리담당” 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
- 건축물 대장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위치로 주소지를 변경하며
- 오가면 양막리에 위치한 양신보건진료소를 양막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함

### 주요골자

- 문화공보실 분장 사무중 “예당관광지 관리” 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,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“문화원관리” 를 삽입(안제3조제2항제2호다목)
-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“자유회관 시설물 관리 · 운영” 을 삭제하고 “예당관광지 및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 · 운영” 삽입(안제12조제1호)
- 주소지와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6개 보건진료소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오가면 양막리에 위치한 오가 양신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오가 양막 보건진료소로 변경(안별표1)

### 참고사항

- 신규시설등에 대한 인력보강승인 통보 [충청남도 행정 12200-665(2002.3.13)]
- 예산군보건소 보건 65550-599(2002.3.16)호

## 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시설관리를 위한 행정기구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“관광체육시설관리담당” 을 신설하는 것과,
  - 건축물 대장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6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위치로 주소지를 변경하고
  - 오가면 양막리에 위치한 양신보건진료소를 양막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관광 체육시설 관리담당이 신설되므로서 시설운영 및 관리유지에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며
- 건축물 대장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보건진료소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위치로 변경하므로서 조례정비의 실효성이 있고
- 양막리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변경은 그 지역에 합당한 명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
- 문화공보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조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 되므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